

의안번호	2211112
의 퇴 인	위성곤 의원
회 답 일	2025. 8. 28.
추계번호	25A348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¹⁾ 에 따른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하여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제1항²⁾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 재정지출 증가가 수반될 수 있음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이하 “재생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개정안의 제안이유³⁾에 제시된 3MW 이하 발전사업을 포함하여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현황, 지리 정보, 계통연계 및 발전소 현황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음
 - * [참고자료 1] 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 운영 현황
 - 다만, 현행 재생에너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태양광 발전에 한정된 반면, 개정안에 따른 통계공유시스템의 수집 대상 정보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포함 풍력, 수력, 지열, 수열 등 총 11개 에너지원) 발전사업에 대한 정보도 포괄함
 -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허가 등 수요·공급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DB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비용으로 볼 경우 ISP 수립 비용, SW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 등이 소요될 것이나, 현 시점에서 해당 비용을 추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2025.7.22. 법률 제21004호로 제25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통계자료의 범위에 “산업부문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이 추가되었으나, 개정안은 해당 규정의 개정 전에 발의 되었으며 법률 제21004호 개정법률의 시행일 또한 2026.1.23.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검토함

3) 개정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하 내용 생략)

-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SW 개발 및 유지관리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연계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수와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 기관 및 규모 등을 바탕으로 투입공수, 구입 대상 장비 및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세부 추진 계획 등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소요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움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행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년간(2025~2027년) 79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⁴⁾
 - 2028년 이후에도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비용 발생 예상
 - * [참고자료 2] 발전사업 통합 인허가 시스템 구축 계획
- 이에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4) 자료 확보 등의 한계로 해당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또한 완료되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되는바 비용추계에 반영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제시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 운영 현황

- (사업내용) 전국 ①태양광 발전사업허가 현황 통합관리 및 ②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발전사업 현황 통합관리) 지자체 인허가 자료를 주 1회 자동 수집하여 발전사업 현황 통합 → 예비 발전사업자 등 대국민 정보제공
 - (발전사업 관련 정보제공) 예비 발전사업자를 위한 발전사업 추진 단계별 필요 정보제공 및 기상정보, 사고 피해사례 등 안내
 - * 접속경로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 (사업기간) 2019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100% 출연
-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피출연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예산사업 현황 >

구분	내용
세부사업명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회계 /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 110-115-5200-5202-303
내역사업명	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 구축
내내역사업명	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 구축
2025년도 예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기능개선 및 고도화 예산 350백만원

< 통계정보 제공 현황 >

제공 정보	원 자료 보유 주체
발전소 인허가 현황	(부처) 산업부 전기위원회(3MW 초과) (지자체) 각 지자체 허가청(3MW 이하)
지리(입지) 정보	(부처) 국토부
계통연계	(공공)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전기안전 및 사후관리	(공공)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전소 현황	(공공) 한국에너지공단
시공기업	(공공) 한국에너지공단
제품정보	(공공)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2] 발전사업 통합 인허가 시스템 구축 계획

- (사업내용) 재생e 발전사업 진행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발전사업 관리) 시도·서울 시스템 등 지자체 연동으로 통합 관리, 업무 주 주기 전산화로 효율성 개선, 전기위·지자체·유관기관 VOC 반영
 - (재생e 보급) 발전설비 완공시점 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입찰·RE100 등 보급정책과 더불어 재생e 산업·계통정책에 활용토록 정보 제공
- (사업기간) 2024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100% 출연
-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피출연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예산사업 현황 >

구분	내용
세부사업명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회계 /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 110-115-5200-5202-303
내역사업명	원스톱서비스지원 플랫폼 구축
내내역사업명	발전사업 통합인허가 시스템 구축
2025년도 예산	시스템 개발 및 연계 기반 구축 예산 1,777백만원

< 연도별 사업계획 >

(단위: 백만원)

연도	주요 내용	예산액
2025년 (1차년도)	발전사업 허가 접수·처리 시스템 개발 및 전기위·지자체 시범 운영, 유관기관 정보 연계 기반 마련	1,777
2026년 (2차년도)	전기위·지자체 시범운영 후 문제점 개선,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 실시 및 실시간 허가신청 건에 대한 DB 구축	3,103
2027년 (3차년도)	전국 지자체 대상 시스템 확산, 취합된 데이터 관리하여 발전사업 정보 유관기관 제공 및 홈페이지 통계 공개	3,095
2028년 이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인허가 체계 변화 등에 따른 기능개선 및 고도화	추후 검토
합계(2025~2027년)		7,975

주: 2~3차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바, 개정안을 통해 시스템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